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3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이수진·박 정·임미애
남인순·박홍배·김문수
전종덕·서미화·서영석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이용(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거나 진료 예약·접수, 처방전 발송, 약국연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자(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는 대가로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생략) <u><신 설></u>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이용(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u>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거나 진료 예약·접수, 처방전 발송, 약국 연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료인 또는 의료</u>
<u><신 설></u>	

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의
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
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
거나 이를 대가로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

-----제15조제1항·
제2항-----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
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
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
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
록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3.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벌칙) -----

-----.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자(해
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는 대
가로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
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한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제89조(벌칙) -----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 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 · 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 1. 제15조제1항 · 제2항 · 제3항(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2. ~ 4. (현행과 같음)
---	---